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원탁대토론회**

2017년 4월 5일(수) 15:30~19:00
서울시청 다목적홀

■ 주 최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원탁대토론회**

2017년 4월 5일(수) 15:30~19:00

서울시청 다목적홀

■ 주 최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차 례

■ 2017대선 핵심 과제와 주요 과제-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 3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 42

2017대선 핵심 과제와 주요 과제-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학생이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미래교육

-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행복한 학교,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 입시와 교육비 부담 해방, 배움이 즐겁고 차별없는 행복한 학교-
-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행복한 사회를 위해-

1. 한국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교육이 모두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높은 교육비 부담과 자녀들의 비인간적인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원과 직원들도 가르침의 보람과 학생들과 인간적인 교류의 즐거움을 맞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기보다 질곡이 되고 있습니다.

한 때, 한국의 교육은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입시중심교육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비판성, 협력과

소통 능력의 발달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특권교육은 양극화를 심화하고 계급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체제의 고통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질곡이 되었으며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입시중심 교육, 관료 지배 구조, 신자유주의 교육이 교육위기의 3대 주범입니다.

여전히 무조건 암기하고,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낡은 입시중심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오로지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기 위한 입시중심교육은 거대한 사회적 낭비입니다. 낡은 입시중심 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창조적 힘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는커녕 현재적 요구에도 제대로 부응할 수 없습니다. 입시중심 교육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한국의 교육체제가 거의 변화가 없었던 핵심적인 원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들이 교육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고위 교육관료 대부분은 교육의 경험도 전문성도 전혀 없는 행정 고시출신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손에서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교육적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 나올 리 없습니다. 오히려 이화여대 사태를 촉발한 엉터리 대학재정 지원 평가사업이나 작금의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증장기적인 전망보다는 권력자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기적 성과를 내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백년지대계는커녕 십년지대계도 없었습니다. 교육 관료들에 의한 교육 지배 구조를 깨트리지 않는 한 제대로 된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1995년 이래 지난 20여 년 간 경제관료와 교육관료들에 의해 반교육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적 원리보다는 경쟁과 시장논리만 중시하였습니다. 일제고사와 특권학교를 도입하여 소모적인 경쟁과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성과급, 성과연봉제, 교원평가 등 교

육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논리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구조조정을 앞세우면서 비정규 교원과 비정규 직원을 대량 양산하여 교육현장을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노동 강도 강화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의 증가는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기반을 파괴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여 입시중심교육을 끝내야 합니다.

역대정권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학입시제도를 손질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의 근원에는 학력차별과 대학서열에 근거한 상위학벌 취득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경쟁은 깊은 경제적·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선발-공동교육-공동학위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건설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입시경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학 네트워크의 건설은 대학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교육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정도가 생존을 위한 스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비용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부터 임금과 승진까지 학력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관료들이 주도하는 교육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교육의 당사자들인 교육주체들과 교육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의 교육부처럼 모든 정책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교육자치, 학교자치, 대학자치 확대와 함께 가야합니다.

○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으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비 부담, 과밀학급-거대학교 등 열악한 교육환경, 비정규직 교직원의 낮은 처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GDP 대비 6~7%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친환경 급식, 20명까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합니다.

○ **민주적 학교 건설로 혁신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혁신학교의 실험을 통해 학생의 발달과 행복이 가능한 교육,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혁신교육의 성공의 열쇠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력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건설입니다.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 기초한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 대학평의회의 민주화-실질화, 교장보직제 도입 등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민주의식, 창의성, 비판적 의식, 협력-소통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수업의 혁신도 가능해집니다.

3. 5대 핵심 과제와 10대 주요과제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 입시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 대학서열 해소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 교육의 민주성과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경쟁보다 협력,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교민주주의 실현’**
- 교육복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실시’**

교육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주요과제

〈교육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

-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 **‘특권학교 폐지’**
- 지역공동체의 요람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 새로운 교육/새로운 학교의 출발 **혁신교육 확산**
- 교육공공성 강화의 핵심 **‘사립학교 민주화’**
-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교육의 출발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 수업혁신과 대학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 경쟁보다 협력을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요과제〉

- 평등한 학교는 평등한 사회의 출발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 권리와 지위향상’**
- 교직원의 권리보장은 민주학교의 출발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청소년도 시민이다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4. 정책 해설

1) 5대 핵심과제

1~2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핵심내용〉

-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 공동선발, 공동교육, 공동학위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 대입자격고사 도입 : 수능 절대평가+내신 절대평가 (독일 아비투어 방식)

1. 추진 배경

- 입시중심 교육체제로 인해 교육적, 사회적 문제 심각
 - 해방 이후 70여년간 입시경쟁이 학교교육을 지배
 - 입시교육으로 인해 주입식-강의식 수업과 반복적 암기와 문제풀이 학습 등 낡은 교수-학습 방법 지속
 - 학생들은 인문,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을 고루 접하지 못하고 입시 중심 과목인 영어와 수학 학습에 매몰
 - 비인간적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은 결혼 포기, 저출산 등 사회문제의 중요한 원인
 - 낡은 입시중심 교육과 변화된 시대의 요구와의 괴리가 계속 확대
⇒ 결국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의 방해, 사회적 고통의 증가, 시대적 요구의 외면이라는 한계 지점에 도달
-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혁의 실패
 - 해방 이후 입시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명분으로 수십 차례 대입제도 개혁 시도하였으나 성과 미비
 - 대학의 서열이 엄격하고,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고, 학벌이 문화적 신분으로 작동하는 사회

- 대학서열 체제 타파 없는 대입제도 개혁은 입시경쟁 해소에 한계

□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협력체제 수립 필요

- 한국의 사립대학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77%)로 대학의 공공적 기반 취약
- 최근 대학의 취업기관화, 영리화 등 대학 공공성 약화
- 학생수 감축에 따른 시장주의적 강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학 내 갈등 심화

2. 주요 정책

□ 대학개혁과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한시적 기구로 대통령 산하(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직속 기구로 설치
-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일적 방안 연구 및 정책 마련

□ 대학통합 네트워크 건설

- 고등교육재정 확대(GDP 1.2%)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성
- 부실사립대학교 국공립화, 독립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들은 공동선발, 공동교육, 공동학위 부여
- 지역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교육 - 공동 연구 체제 구축
- 대학통합네트워크 학생들의 대학 무상교육 추진

○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에는 정권 출범 이후 최소 3~4년 소요
 ○ 2021년 이후 대학 입학생은 40만 명 내외로 예상 (총학생수는 45만~50만명 정도)
 ○ 40만 명 중 15만 명은 직업대학(전문대학)으로 진학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정원은 20만 명 내외로 설정
 ※ 전문대학도 공영형(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하고 국가직업교육위원회에서 관리

□ 대학입학 자격 고사 도입

- 매년 20만 명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 입학 자격 부여
- 대학입학 자격은 기본적인 공정성과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수준 시험과 학교 내신을 합산하여 산정 (독일의 아비투어 방식)
- 국가수준 시험은 기본 과목을 중심으로 5단계 절대 평가 실시
- 시험문항은 논·서술형을 원칙으로 함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 필요)
- 학교 내신은 심화과목을 중심으로 5단계 절대 평가 실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 이른바 명문 사립대들을 대학통합네트워크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가?
 답변> 현재의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적음. 특히 수도권 사립대 일부는 독자 생존을 모색할 것임. 따라서 전반적인 대학체제는 독립사립대학들과 통합네트워크의 대학들로 양분될 것임. 초기에는 독립사립대학들이 상위 학벌을 차지할 것임. 따라서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도 학벌체제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은 아님.

● 그렇다면 입시중심 교육체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답변> 그렇지 않음. 이제 초중등 교육은 명문 사립대학교 진학 준비가 아니라, 대학통합네트워크 진학 준비에 초점을 맞추면 됨. 또한 국가는 통합네트워크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함. 교육여건 개선, 학비 무상화, 공공기관과 공무원 우선 채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함. 또한 동일한 졸업장을 가진 20만 명의 통합네트워크 출신 졸업자들은 사회에서 사립대학 출신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높은 대학 교육비, 비인간적인 입시교육을 감수하면서 사립대학에 보낼지, 통합네트워크 대학에 보낼지 충분한 선택 사항이 될 것임.

● 수도권 인구에 비해 통합네트워크 정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답변> 사실 가장 고민스런 부분임. 수도권 대학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 관건임. 상위 서열의 대학이 아니면 충분히 가입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금도 많은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지방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음. 문제는 대학들의 교육여건을 균등하게 하는 것임.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핵심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 폐지
 ○ 유치중등 교육업무 시도교육감에 대폭 이양
 ○ 학교의 자율성과 대학의 자치 확대

1. 추진 배경

- 정치적 중립성, 정책의 일관성, 중장기적 전망 부재
 - 한국사 국정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자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부재
 -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임명직 고위관료(장차관)의 잦은 교체와 정권이 요구하는 단기적 성과중심의 정책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적인 전망 결여
 - 현재의 교육부 체제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교육계획 수립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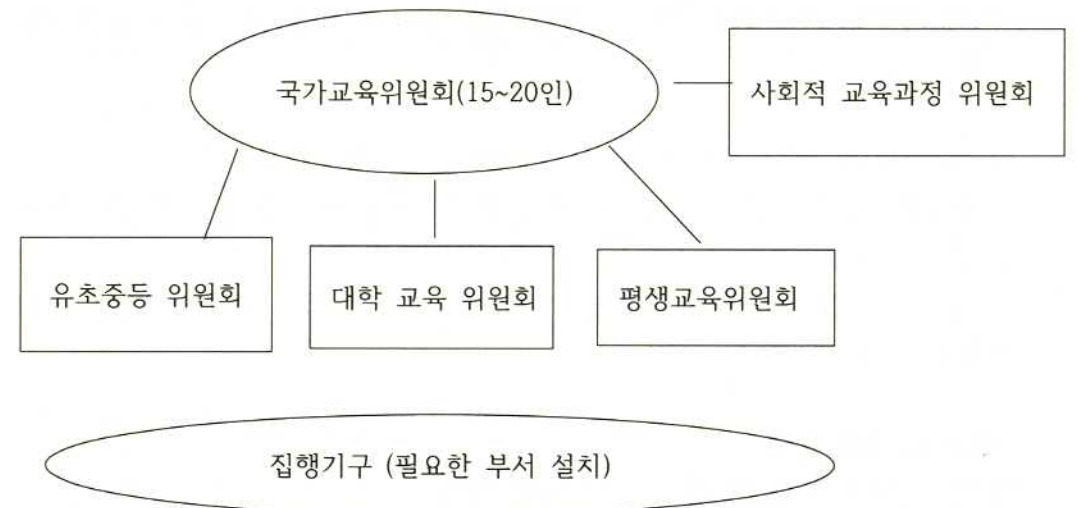
- 전문성, 현장성, 연결성이 부족한 정책의 양산
 -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고위관료들 대부분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 결여
 - 교육부의 경직된 관료 체제로 인해 각 급별(유·초·중·고등 교육), 영역별(교육과정, 교원정책, 교육복지 등) 유기적 연관성이 부족한 정책 양산

- 교육주체 간의 갈등 유발과 민주성과 자율성 억압
 -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시도교육감과 교육정책집행과정에서 지속적 충돌과 갈등 심화
 - 교육부의 권한 독점과 일방적인 상명하달의 교육행정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주체의 자치 억압

2. 주요 정책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국가교육위원은 교육주체의 대표성과 교육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민주적으로 선출
 - 산하 위원회와 집행기구에는 교육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즉 교사, 교수,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등)이 전체 인원의 2/3가 넘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현실성 제고

<국가교육위원회 모형>



※ 평생교육위원회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로 대체 가능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 위상 :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입안 및 심의, 집행
- 구성 : 교원 (교사+교수), 학생(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국회-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교육전문가)
- 산하 조직 : 유치중등 위원회, 대학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등

<국가교육위원회 유형 : B 또는 C형>

성격 \ 위상	정책수립(자문)기구	정책 수립·집행기구
대통령·행정부 소속	A 유형 (사례: 교육개혁위원회)	B 유형 (사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부로부터 독립		C 유형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 유치중등 교육 업무 권한을 교육감(협의회)에게 대폭 이양
 - 교육과정, 인사, 평가, 징계, 임용, 정원, 학교 인허가, 교부금 시도 배분, 교장 공모제 등
 - 교과서, 징계, 공모제, 학교 지정과 취소 등을 둘러싼 교육청 - 중앙정부 갈등 종식

- 대학자치와 학교 자치 확대
 - 대학평의회에 학생, 비정규교원과 비정규직원의 참여 확대와 자치적 의사결정구조 강화
 -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전문성과 규모를 감안한 적정 수준의 대학 총장 선출권 보장

<법.제도 개선 방향>

- 1)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 2) 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 3) 국가재정법

4 학교민주주의 실현

<핵심내용>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보편적 순환보직제 실시
- 대학총장 직선제 등 대학의 자주적 선출 방식 보장
- 학교자치위원회(의결기구) 설치와 대학평의회 활성화

1. 추진배경

-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 운영에서 소외
 -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과 학교장이 학교운영 권한 독점
 - 학교장은 다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 담당
 - 권력독점과 명령 중심의 학교운영은 학교의 활력을 질식시키고, 교사와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상호 협력을 억압하여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킴
 - 상명하달식 교육행정으로 학교가 교육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운영

- 반교육적 승진 경쟁으로 학교공동체 파괴
 - 교장의 막강한 권한과 점수 중심의 교장 승진제도는 반교육적 승진경쟁을 유발
 - 교원평가와 성과급까지 가세하면서 교사 사회의 공동체성 파괴
 - 교육청의 장학직이 승진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 발생

- 대학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 대학민주화가 위협받고 있음. 교육부는 불법적인 행재정적 압박을 통해, 관료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총장직선제를 폭력적으로 폐지했음. 또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거부나 제2순위후보자 임명등을 통해 대학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교란시켰음.

□ 또한 대학평의회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학주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 주요 정책

□ 보편적 순환 보직제 도입

- 1단계 : 모든 자율학교에 내부형 공모 교장제도 도입
- 2단계 : 교장자격증제 폐지, 학교자치위원회에 의한 교장선출제 도입, 교장 순환보직제(교장-평교사), 교육청 장학직 순환 보직제(장학직-평교사)

※ 교장선출보직제의 중심 내용

□ 교장 자격 : 일정한 교직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 (교장자격증제 폐지)

□ 선출 방식 :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교향식) →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선거인단이 선출 →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교직원회에서 교향식 추천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을 억제하고, 모든 교직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임. 교직원회에서 추천받은 교사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선출 대표단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선거를 진행함.

□ 교장의 역할 : 교직원회의의 주재, 학생회와 학부모회 지원, 학교내외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 교원의 공동학습·연수 등 지원

□ 심의 의결기구로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 학교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 (일인 결정하고 모두가 복종하는 체제에서 모두가 결정하고 모두가 책임지는 체제)
- 학교자치위원회 산하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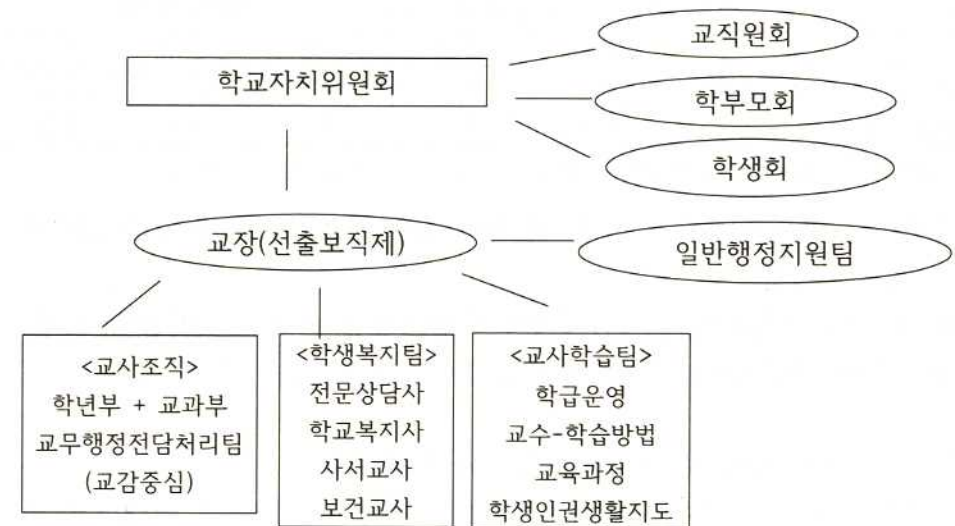
※ 학교자치위원회 산하 단체의 역할

- 교직원회 - 교육과정, 교원인사, 예·결산, 학사일정, 학교 혁신, 학칙개정 등
- 학부모회 - 학교운영과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평가, 견제의 역할, 학교자치위원회 참여
- 학생회 - 학칙 제·개정 참여, 학생회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학생복지, 학교자치위원회 참여, 교직원회의의 참관 및 의견 개진

□ 교사와 학생 지원체제 강화

- 교무행정전담처리팀, 학생복지팀, 교사 학습팀 운영
-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무행정인력 충원
- 학교 행정실 법제화
-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업-평가 혁신 추진

<새로운 학교의 모델>



□ 대학자치와 학교 자치 확대

- 대학평의회에 학생, 비정규교원과 비정규직원의 참여 확대와 자치적 의사결정구조 강화
-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전문성과 규모를 감안한 적정 수준의 대학 총장 선출권 보장

5 교육재정확대 - 무상교육 실시

- <핵심내용>**
- 교육재정 정부 부담 GDP 5-6% 확보
 - 고교까지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1. 추진 배경

□ 여전히 부족한 국가부담 공교육비와 여전히 높은 민간 부담 공교육비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13)】 (단위: %)

구 분	초등학교~고등교육			고등교육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한 국	5.9	4.0	1.9	2.3	0.9	1.3
OECD 평균	5.2	4.5	0.7	1.6	1.1	0.5

주 1) 2013년도 GDP는 1,429조원임 /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2016)

- 초중등이나 고등교육 모두 민간 즉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 높음
- 2013년 기준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3년, ppp 환산액)은 \$8,658로 OECD 평균(\$10,493) 보다 낮은 수준

- OECD 회원국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무상교육
- 대부분의 회원국은 의무교육 종료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의무교육 연한을 중학교(14세)까지 실시
 - 박근혜 정권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일방적 폐기와 반값 등록금 정책 포기
 - 한국은 초·중학교의 무상교육(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방과 후 교육활동비, 현장(수련, 수학여행)학습비, 고등학교의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학습재료비를 민간이 부담

-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필요

2. 주요 정책

- 고교까지 등록금 무상(매년 2.3조원 소요)
- 고교까지 학부모부담 경비 제로 추진(매년 4조원 소요)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매년 1.5조원 추가 소요)
-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매년 1.4조원 재원 확보)
- 국가장학금제도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
⇒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과 공영형 전문대학에 집중 지원

<법.제도 개선 방향>

-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확대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의 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학교급식법 개정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 10대 주요 과제

1-2 특권학교 폐지/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핵심내용〉

-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 고교 연합고사 폐지 / 고교평준화 확대
- 강제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중지하고 지원 강화
- 지자체의 학교교육지원 확대와 지역에 다양한 교육인프라-프로그램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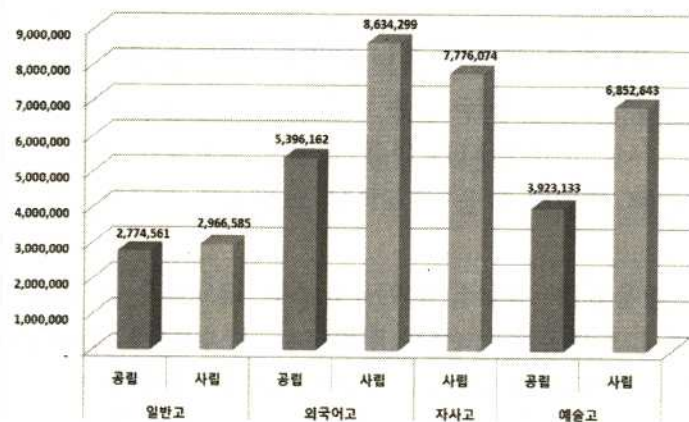
1. 추진배경

-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고교체제가 구성되면서 고교 간 학력격차 및 교육불평등 심화
<고등학교현황(2014)>

시도	총계	일반고	자율고		소계	특수목적고						소계	특성화고
			사립	공립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전국	2,326	1,520	49	115	164	26	31	7	28	15	36	143	499
비율	100	65.4	2.1	4.9	7.0	1.1	1.3	0.3	1.2	0.6	1.6	6.1	21.5

- 특목고와 자사고는 상류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변질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연평균 학비 현황



-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 설립 취지와 다른 입시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입시명문고 변질

<학교유형별 서울대 입학자수(2013-2015서울대 입학생수)> (단위, 명)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학생수 (2013~2015년졸업)	1,471,929	64,468	52,893	330,797
서울대 입학생수	5,328	2,805	1,662	18
매년 1,000명당 입학생수(3년 평균)	3.6	43.5	31.4	0.1

자료 : 유기홍의원실(2015)

- 중등교육은 보편적 교양교육 강화가 세계적 추세
- 기술 교체 주기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술보다는 보편적 능력이 중요
- 정부에서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강조하면서 특권학교 확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
-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고교 평준화 확대 찬성

지역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찬성율) 결과
경기도	용인(71.0%), 광명(83.9%), 안산(81.1%) 의정부(76.1%)
강원도	춘천(70.8%), 원주(69.1%),강릉(71.3%)
충남	천안(73.5%)

- 경제논리에 입각한 작은 학교 강제 폐교 추진

○ 급별 학생 수 규모

구분	60명이하	61-120명	121-180명	181-240명	241-300명	301-1000명	1000명초과	계
초	1,228	717	235	239	226	2,774	579	5,998
중	531	231	146	118	140	1,852	190	3,208
고	54	84	85	86	92	1,283	668	2,352
계	1,813	1,032	466	443	458	5,909	1,437	11,558

* 휴교는 포함, 분교장 제외

- 2015년 12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 면·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통·폐합
 - 읍 지역 학생 수 12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180명 이하의 중·고등학교 통·폐합
 - 도시 지역 학교라도 초등학교 학생 240명 이하인 경우와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 통·폐합 대상으로 발표.
 - 폐교되는 학교는 귀농·귀촌, 지역 관광 거점으로 활용. 영세 사립 초·중·고에 재산평가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 학교는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전체 학교의 무려 40%가 해당됨.

구분	초	중	고	계	구분	초	중	고	계
서울					강원	156	64	12	0
부산	9	1		10	충북	97	33	1	10
대구	1	2		3	충남	149	45	1	3
인천	14	10	5	29	전북	183	80	9	29
광주	3	1		4	전남	178	104	7	4
대전	3	1		4	경북	188	112	11	4
울산	5	1		6	경남	143	49	7	6
세종	3	2		5	제주	20	7		5
경기	76	19	1	96	계	1,228	531	54	1,813

* 단위 : 개교 (휴교학교 포함)

○ 소규모학교(60명이하, 분교) 시도별 현황('16.4.1. 기준)

2. 주요 정책

- 입시귀족학교로 변질된 특목고, 자사고 전면 폐지
-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로 구분
<학교제도 개편>

개편 이전	⇒	개편이후
일반고, 특목고(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고
예술고, 체육고		예체능고

- 선발기능이 상실된 고교연합고사의 폐지,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 확대
- 작은학교 강제 통폐합 중단과 지원 강화
 -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강제 통폐합 중지
 - 학교 통폐합 유도하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폐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배 시에 농어촌 지역 배려
- 지역과 학교의 협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 마을학교 등 지역 사회에 다양한 교육지원 인프라 건설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새로운 교육/새로운 학교의 출발”
혁신교육 확산

〈핵심내용〉

- 입시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의 확산
-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확산
- 행정중심에서 교육중심 학교 건설

1. 추진배경

- 혁신학교를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의 위력 확인
 - 내부형공모제 등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학교교육력향상에 결정적 기여
 - 민주적 학교 운영에 의한 교사, 학생들의 참여 확대가 학교 교육 성패의 열쇠
 - 교사연구공동체의 활성화가 수업혁신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 학교업무정상화(불필요한 업무폐지)를 통해 학교와 교사가 학생교육에 집중
-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하고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국화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혁신학교의 2단계도약을 이루어 냄

2. 주요정책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교육과정(수업과 평가)의 혁신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입시중심교육에서 벗어난 다양한 수업혁신과 교육과정 실험
- 교육중심의 학교-학교업무정상화 내실화 및 확대-불필요한 행정업무 폐지로 학생 교육에 전념
- 교사연구공동체 건설-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는 교사문화 확산으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학교의 모델>

교사조직	학생복지팀	교사 학습팀
학년부 + 교과부 교무행정전담처리팀 (교감중심)	전문상담사 학교복지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학급운영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학생인권생활지도

4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핵심내용〉

-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 부실 비리사학 국공립화

1. 추진 배경

- 높은 사립학교 비율과 부실사학과 사학비리 빈번
<급별 설립자별 학교 수> (교육통계 2015)

단계/ 수	국립	공립	사립	전체
유치원	3	4,675	4,252	8,930
초등학교	17	5,886	75	5,978
중학교	9	2,554	641	3,204
일반계고교	11	886	640	1,537
특목고	8	100	40	148
특성화고		277	221	498

- 고등교육은 사립 비율이 세계최고
 - OECD국가들의 대학이 대부분 국립대인데 비해 사립대학(독립형사립학교) 학생비율이 77%로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 2011년 기준으로 총 346개 대학 중 일반대가 179개인데, 그 중 사립대학 152개로 84.9%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대의 경우도 145개중 사립대는 136개
 - 사립대학은 등록금수입이 64.0%를 차지하여 재정의 2/3를 차지하며,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이 태반임.

	A유형 고등교육에 등록한 전일제 학생 비율	A유형 고등교육 전일제 등록 학생 비율			비교교
		국공립 학교	정부의존형 사립학교	독립형 사립학교	
	(1)	(2)	(3)	(4)	
OECD 회원국					
한국	m	23	a	77	서열화
호주	71	96	a	4	
오스트리아 ²	m	84	13	3	
벨기에(플란드르어권)	75	52	48	m	
벨기에(프랑수어권)	84	33	67	m	
캐나다	82	m	m	m	
칠레	m	23	18	59	서열화
체코	97	m	m	m	
덴마크 ³	90	m	m	m	
에스토니아	87	m	93	7	
핀란드	56	74	26	a	
프랑스	m	86	5	9	
독일	94	96	4	x(3)	
그리스	100	m	m	m	
헝가리	65	m	m	m	
아이슬란드	71	m	m	m	
아일랜드	87	m	a	m	
이스라엘	82	m	m	m	
이탈리아	100	90	a	10	
일본	91	25	a	75	서열화
룩셈부르크	95	m	m	m	
멕시코	95	67	a	33	
네덜란드	86	m	a	m	
뉴질랜드	60	m	m	m	
노르웨이	71	85	5	10	
폴란드	45	90	a	10	
포르투갈 ³	m	m	m	m	
슬로바키아	64	93	a	7	
슬로베니아	75	94	6	1	
스페인	76	88	a	12	
스웨덴	48	93	7	n	
스위스	89	95	3	2	
터키	100	94	a	6	
영국	76	a	100	n	
미국	66	70	a	30	서열화

OECD교육지표(2012)

□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은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들이 학교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버지 이사장에, 아내 총장, 아들 교장에, 딸 행정실장, 며느리 교사 등으로 이어지는 족벌운동을 통한 학교 사유화를 다시 완전히 합법화할 수 있게 됨.
- 사립학교 회계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이며 사립 중 고등학교 회계에서 교육청 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주요 정책

□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의 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사학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사학의 임원이나 교원에 임명될 수 없고, 사학비리로 해임된 자는 10년간 사학의 임원이나 교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강화.
-사립학교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사학비리나 재단분규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사학분규로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때 관할청은 즉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여 학교 운영을 정상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정상화

- 위원 과반수를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한 대법원이 추천 → 위원 전원을 국민 대표인 국회가 추천
- 사학 비리, 학내 분규로 유죄 확정된 자는 이사 선임과 이사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

□ 사립중고교 교원 임용 때 교육청이 1차 전형을 위탁하여 3배수 선발

□ 최소한 책임인 법정부담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 희망하는 사학을 국공립으로 전환
- 대학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 부실 사학 중고교생들의 교육 기회 악화를 예방
- 부실 사학 대학생들에게 부당한 등록금 전가를 예방

5 **질 높은 무상 유아교육 실시**

- <핵심내용>**
- 다양한 유아 양육 지원체제 구축
 -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OECD수준으로 재정확보
 -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입각한 유보통합 실현

1. 추진배경

□ 유아교육 체제의 미비와 혼란

- 유아교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
- 유아수준에 맞지 않는 장시간의 기관생활, 교육과 돌봄 기관의 난립과 혼재, 방만한 유아-보육교사의 자격 수준,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보육비) 부담 가중
- 유보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

□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 증가

-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이 증가하면서 돌봄 취약 계층 확산
- 사회불평등 확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질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 취약한 유아교육 인프라 때문에 결혼포기, 출산 포기 증가

□ 사립 유아교육기관의 높은 비중

- 유치원의 46%가 사립, 전체 유치원생의 3/4이 사립유치원생이며, 학부모의 부담 가중
- OECD 국가 평균 유아교육비가 GDP의 0.5%인 반면, 한국은 0.2%
- 영리적 사립유아교육기관에서 과도한 교육, 선행학습 유행

2. 주요정책

□ 다양한 유아 양육 지원 체제 구축: 각종 휴가제와 수당을 강화

<국제적 사례: 핀란드>

- 관점: 일하는 부모를 위해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서의 영유아가 아닌, 질 높은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받는 주체로서의 영유아 관련 제도와 운영 시스템의 의사결정에 있어 아동의 권리와 요구에 근거함
- 가족 휴가제: 출산 휴가제, 부모 휴가제, 전일제 육아휴직, 시간제 육아휴직, 부성휴가
- 각종수당: 아동양육수당, 아동수당, 모성수당, 민간 아동보육수당

□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OECD수준으로 재정확보

• 국공립 유치원 확대

- 병설유치원 우선 확대.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 우선 신설 및 기존 초등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병설유치원 우선 설치안 마련. 신설 비용 및 지역적 필요성을 고려한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 유아교육의 GDP 0.5% 확보 및 공적 부조 비율 확대
 - 유아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재정 확대 계획 마련하기 위해 OECD 수준으로 매년 GDP 0.1% 확대 확보하여 완전무상교육을 지향

□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입각한 유보통합 실현

• 발달단계에 따른 학제 정비 및 유아교육 기본 학제화

- 0-2세/3-5세 구분 : 영아원/유아학교
- 3~5세 기본학제화(의무교육은 아니며 공교육으로 권리보장)

• 0~2세 보육과정/3~5세 교육과정 정립

- 누리과정 폐지
- 돌봄에 중심을 두는 0~2세 보육과정과 놀이에 중심을 두는 3~5세 유아교육과정 정비
- 발달 역행하는 선행학습 금지,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 **질 높은 보육/유아 교사 양성**
 - 방만한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개편, 체계화
 - 0~2세/3~5세 자격 및 양성과정 구분 : 두 양성과정 모두 4년제 학사 이상
 - 유보통합과정에서 보육/유아 교사 자격 이전 시 우수한 보수교육으로 전문성 강화(자격 전환시 1년 유급 보수교육 실시)
 - 3급 보육교사 단기 과정 폐지
- **행·재정적 통합**
 - 기관 정비 : 0-2세 영아원, 3-5세 유아원
 - 부처 통합 : 영아원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또는 교육부로 일원화

< 법제도 개선사항 >

사업명	법제도 개선내용
유보통합	- 유아교육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개정 - 영유아보육법 및 동 시행령 등 법률 개정
단계적 무상화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 시행령 개정 - 2015년부터 유·보육비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는 수요 포함

6

학급당/교원당 학생 수 감축

<핵심내용>

- 모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최대 20명 이하로 감축
- 모든 농어촌 중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 최대 20명 이하로 감축
- 모든 도시 중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 최대 25명 이하로 감축
- 모든 대학교 교원당 학생수 15명 이하로 감축

1. 추진배경

□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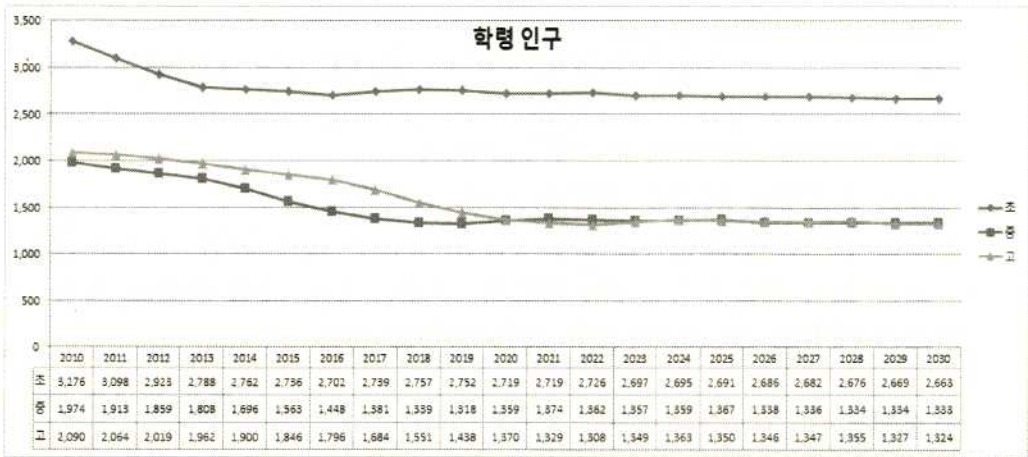
구 분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2014	한 국	23.6	31.6
	OECD 평균	21.1	23.1

주 1) OECD 기준 학급당 학생수에는 해당 교육단계의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제외됨.

2) 고등학교 단계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에서 산출하지 않음.

- OECD 국가 중에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27개국 중 26위

□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 중·고등학교 학령인구가 2020년까지 지속적 감소
- 커다란 재정 투자나 신규 학교 설립 없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가능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 여건
 - 다양한 수업방식의 도입을 통한 수업혁신
 - 학급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학교 폭력 감축
 -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 지도 가능

□ 대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2010~2014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10~2014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전 계열			의학계열 제외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2010년	27.2	30.3	29.5	30.7	36.1	34.7
2011년	27.3	29.9	29.2	30.7	35.6	34.3
2012년	26.9	28.8	28.3	30.5	34.0	33.1
2013년	26.8	28.1	27.8	30.5	33.1	32.5
2014년	26.6	27.6	27.3	30.4	32.3	31.8
증감('14-'10)	-0.6	-2.8	-2.2	-0.3	-3.8	-2.8

-이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5명'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임.

2. 주요정책

-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하로 감축
-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농어촌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하로 감축
 - 도시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5명 이하로 감축
- 모든 대학교 교원당 학생수 15명 이하로 감축

7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핵심내용〉

- 교원평가 폐지 - 학교자치위원회 중심의 자율적 진단활동 전개
- 교사성과급의 수당화 / 대학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 일제고사 폐지
- 교사·공무원 정원 감축 유도하는 총액인건비제 폐지

1. 추진배경

- 유초중등 교원들에게 교원 평가, 성과급, 근무 평정 등 각종 평가를 중복 실시
 - 2016년 성과급은 교원들의 성과급폐지반대투쟁으로 인해 학교 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개인 성과급에 포함시켰음. 한 근평과 성과급을 통합하여 교원 업적평가로 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임금과 인사를 연계하여 교원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음.
 - 성과급은 교원 역량 향상에 전혀 효과가 없었음. 갈등과 행정업무만 증가. 교원들은 성과급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성과급균등분배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교원평가 훈령이 12월 29일 교육부 발표로 제정됨. 2015년 교원평 가지침에 내용과 흡사하지만 훈령으로 강제함으로써 교원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됨.
- 중고교생에게 일제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중
 - 일제고사는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및 사교육비 증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반교육적 경쟁이 악순환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 향상에 전혀 효과가 없었음.
- 국립대학의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성과급적 연봉제는 등급화를 둘러싸고 상호약탈적인 경쟁과 학내 불화를 가져와 대학의 지성 공동체 그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고, 단기적 연구 성과물 경쟁으로 중장기적 학문연구를 억제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것임.

2. 주요정책

- 비교육적인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 교원평가 폐지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주체 간의 협의회 활성화
 - 학교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학교교육 진단활동 강화
 - 교원 성과급 수당화
-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 비교육적 경쟁 유발하는 일제고사 폐지
 -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비중 축소 / 지필평가 논서술형으로 점진적 전환
- 대학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8

비정규직 교직원의 권리와 지위 향상

<핵심내용>

- 국가나 시도교육청이 직접채용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
- 초·중등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종합 대책 수립
- 대학시간강사제도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와 수 십 가지 비정규교수 제도를 통합한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1. 추진배경

□ 차별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

- 노동자를 양성하면서도 노동에 부정적인 교육현장
- 비정규교직원과 교원에 대한 임금, 근무여건에서 극단적인 차별
- 행복한 학교와 국가경쟁력 및 사회통합력 향상은 교육노동문제해결로부터 가능.

□ 초·중등 비정규 교원과 직원의 문제

-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학교 회계직 141,173명, 비정규직 강사 164,870명, 파견·용역 27,266명, 기간제 교사 46,666명으로 약 38만 명임.
- 학교회계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평균 임금은 연간 1,800만원 수준).
-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확대됨. 명절휴가비, 급식비, 상여금,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비 지급에서도 차별.
- 1년 미만 계약자 및 주 15시간 근로 미만자들은 각종 처우개선 수당 적용에서 제외. 방학 중 임금 미지급.

□ 대학교 비정규 교원과 직원들의 차별 문제

- 대부분 간접고용 된 청소, 시설관리, 기숙사관리, 경비 업무담당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임금 상황임.
-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형태의 '학생이 아닌 조교'(비학생 조교) 문제.

-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원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2015년 1학기 기준 전국 대학 시간강사 실 인원은 71,582명. 대부분 6개월 이내의 단위로 계약(98.9%). 평균 연봉은 1천 5백만 원 미만.

2. 주요 정책

□ 유초중등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비정규직 철폐

- 국가나 시도교육청이 직접채용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
- 초·중등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

□ 대학 비정규교원과 비정규직원 문제 해법

- 국가나 대학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채용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
- OECD 평균 수준의 교수1인당 학생 수 15명, 책임시수를 6시간 담당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포함토록 의무화.
- 계열별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
- 시간강사 등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국립대학은 정부가 전액 부담, 사립대학은 매칭펀드제로 책임분담하여 생활임금 지급 및 고용안정 보장하는 법적 교원지위 부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의 1개 대학 최대강의시수는 6시간(1개 대학에서는 6시간 이하만 강의담당가능)으로 하여 대량해고 방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시 정부부담 비용의 약식 추계

- 세부추계는 법제정 시 지급인원, 지원액, 임금 외 지원내용에 따라 달라짐>
- 1. 국립대학 약 1만명*2천만 원(1개 대학 최대강의시수 6시간 기준)=2천억 원
- 2. 사립대학 약 6만명*1천만 원(1개 대학 최대강의시수 6시간 기준 2천만원의 50%)=6천억 원
- 3. 비정규교수 7만명*퇴직기금= 1.과2.합산 8천억 원의 1/12에 해당하는 667억 원
- 4. 기존 정부부담 비용 제외하면 1.은 실제로는 1천 억 원 미만 소요 예상.
- 5. 2.의 경우 중등사립학교 교사의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경우 해당 예산을 한국연구재단으로 돌려 비정규교수 고등교육기여금 항목 신설하고 사립대학 비정규교수가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급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
- 6. 1~4를 감안하여 총계를 내면 매년 1천억원+6천억원+667억원=7,677억원 추가 소요

9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

〈핵심내용〉

-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원노조법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가입 자격도 허용하여 교수노조 합법화
- 교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피선거권 보장

1. 추진배경

- 현행의 교원노조법은 사실상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제한하는 법률
 - 산별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여 퇴직교원, 해직교원, 예비교사 등의 가입이 불가능. 결국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시킴.
 - 단체교섭권도 교섭의제 제한, 단협 효력 제한 등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됨.
- 대학교수들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당함
 - 교원노조법에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교수의 가입 자격을 배제.
 - 대학구조조정과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교수의 신분안전성 증가와 처우 열악.
 - ILO 등에서도 교수노조 합법화 권고 결의.
-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
 - 대학교원에게는 모든 정치적 자유를 허용한 반면 초중등 교원에 정치적 자유 부정.
 -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박탈,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후원 등의 자유 부재.

- 대학교원들과 다르게 초중등 교사는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해야 함(피선거권 제한).
- ILO, 유엔인권위 등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계속 권고함.

2. 주요 정책

- 유초중등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조합 가입 자격을 퇴직, 해직, 예비 교사로 확대.
 - 단체교섭 의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강화.
 - 공익사업장에 준하는 단체행동권 보장.
- 교수노조의 합법화
 - 교원노조법 개정하여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 사직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

10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핵심내용〉

- 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피선거권 보장
- 청소년의 정당 가입의 자유 보장
- 학생 자치 활성화와 학생회-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1. 추진배경

□ OECD 국가 중 만 19세 투표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

구 분	선거권 연령	비 고
오스트리아	16세	
그리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라트비아	18세 (33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는 선거권 연령 16세 ▪ 슬로베니아는 고용된 경우는 선거권 연령 16세 ▪ 일본의 선거권 연령하향 (20세→18세) : 2015. 6. 개정
대한민국	19세	

- 청소년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부재로 민주시민교육 위축
-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핵심 목적으로 민주시민양성과 민주국가 발전을 제시.
 - 하지만 정치적 자유의 금지와 정치교육에 대한 규범의 부재로 민주시민교육 불가능.

2. 주요 정책

- 투표 연령 만18세 하향 조정하고 이후 지속적 하향
- 피선거권도 투표권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보장
-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 등을 참조하여 정치교육의 규범 마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

1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 제안 배경

- 모든 학생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기계처럼 공부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간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필요
 - 경쟁 중심의 학교교육, 통제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협력 부족
 - 협력적 인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협치로 사람다운 삶이 있는 교육 필요
-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 '추격산업화' 시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주의 흐름 속에서 교육불평등 심화
 -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수직적 서열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필요
 -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및 사회전반에서 교육불평등 요소의 제거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우리 국가의 미래를 같이 책임지기 위해
 - 알파고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 인간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우려
 - 지방교육 자치 및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치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공동체 구축 필요

2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하는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

영역	의제	주요 내용
미래에 도전하는 교육	1. 미래 역량을 키우는 'k-5-4-3' 학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 ○ 초등학교 5학년제로 수업 연한 1년 단축 ○ 중학교 4학년은 전환학년제로 운영 ○ 고등학교는 개방형 학점제 전면 도입
	2.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 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보장 ○ 교과서 발행 및 사용의 자율화 ○ 교사의 평가 재량권 전면 부여
	3.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형, 개방형, 초빙형, 내부형 ○ 교원 임용고사 선발 전형 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직무 중심, 역량면접형 등
	4.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공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 학생 중심 학교 건축 ○ 미래형 학교·교실 공간 설계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5.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확보 ○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도입(4개년 계획)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실 교원 등 인프라 확충
	6.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인 제2의 고교평준화를 통한 고교 유형의 패러다임 전환 :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 ○ 고입전형시기 개선 : 3단계 전형 실시 ○ 대학체제 개편 : 통합국립대학 구성 등 3단계 ○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대학입시제도 개선
	7. 학력·학벌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금지 및 교육불평등 해소	○ 위기 및 부적응,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지원 강화
	8.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전면 도입	○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도입 ○ 교습시간 제한 통일 ○ 지자체 연계 주말프로그램 마련
	9. 유아교육 및 사학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 ○ 국공립 유치원 확대 ○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 율 과 협 력 이 살 아 있 는 교 육	10.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 국가수준의 교육체제 개편(국가교육위원회) ○ 교육감의 자치 사무권 확대 ○ 교육지원청을 행정청에서 지원조직으로 전환 ○ 교직원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적기반 확충
	11. 교복입은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면화	○ '민주시민교육' 교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 선거연령 만19세 → 만18세 하향 조정 ○ 「교복입은 시민」 실현을 위한 학생의회 및 학생회 활성화
	12.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 마을 자원의 정규수업-활용 ○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 개방 ○ 학교와 마을의 상생적 역할 분담 ○ 민·관·학이 함께하는 다층적 교육거버넌스 구축